Ⅲ. 해외 지급여력규제 추세

1. EU Solvency Ⅱ

가. 배경

2000년대에 들어와 금융공학을 활용한 금융상품이 보편화되고, 글로벌화 및 겸업화 전략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가 보험회사의 주요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만큼 보험회사가 노출되는 위험도 복잡하고 관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 경영에서는 위험을 전사적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유인이 커지고 있고, 금융감독당국도 단순한 지표를 활용해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보험회사 부실에 조기 대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EU Solvency Ⅱ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는 역내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감독 원칙을 제시해야만 하는 필요성도 있지만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힘든 현행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EU Solvency Ⅰ)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 EU Solvency Ⅱ 특징 〉

- 원칙중심 감독
- 보험회사가 노출된 모든 위험을 반영
-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시가평가
- 전사적 위험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체계 도입

1970년대에 제안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EU Solvency I은 보험료와 준비금이라는 두 가지 지표만을 활용해서 보험회사가 노출된 위험 총량을 개략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서 예상되는 손실이 충분히 반영된 회계정보가 활용되는 것도 아니어서 보험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지급여력평가라고 보기도 힘들다. 이에 따라 Solvency II는 보다 다양한 위험을 정교한 방식으로 평가할 것과 평가 시점에서 예상되는 손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할 것을 제안한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Solvency I의 문제점은 유럽의 지급여력감독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여러 나라에서 지급여력규제의 모범으로 여겨져 온 미국 RBC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유사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현행 Solvency I의 대안으로 EU가 제시한 Solvency II의 개혁적 내용들은 IAIS가 보험핵심원칙을 개정하는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나라가 Solvency II를 자국의 지급여력규제 개선의 모델로 삼고 있다.

나. 특징

EU Solvency II의 목적은 보험계약에 내재된 위험에 민감하도록 지급여력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EU Solvency II는 은행업의 Basel II에서 제시된 정량평가, 정성평가, 시장규율의 3층 구조(3 Pillar) 체계를 보험업에도 채택하고 있다.

우선 EU Solvency II의 정량평가(Pillar 1)는 가용자본을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여 산출하고 보험회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정도(가용성, 영구성, 후순위성 등)에 따라 자본의 질을 차별화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EU Solvency II는 요구자본(Solvency Capital Requirement)이 위험에 민감하게 산출되도록 위험을 세분하고 기존의 위험계수방식보다는 시나리오방식이 보다 보편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EU Solvency II의 정성평가(Pillar 2)는 보험회사가 위험관리에 대한 적절

한 의사결정 구조와 절차를 갖추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자사의 지배구조와 내부 통제 및 위험관리를 평가하여 그 과정을 문서화하고, 금융감독당국은 그 문서에 기초하여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유지를 모니터링 하는 ORSA 시행이 강조된다.

마지막으로 시장규율(Pillar 3)은 보험회사가 지급여력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도록 하여 시장의 이해관계자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상황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기존보다 많은 위험관련 정보 공시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보험회사에 상당한 정보공시 부담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Ⅲ-1〉 EU Solvency Ⅱ의 구성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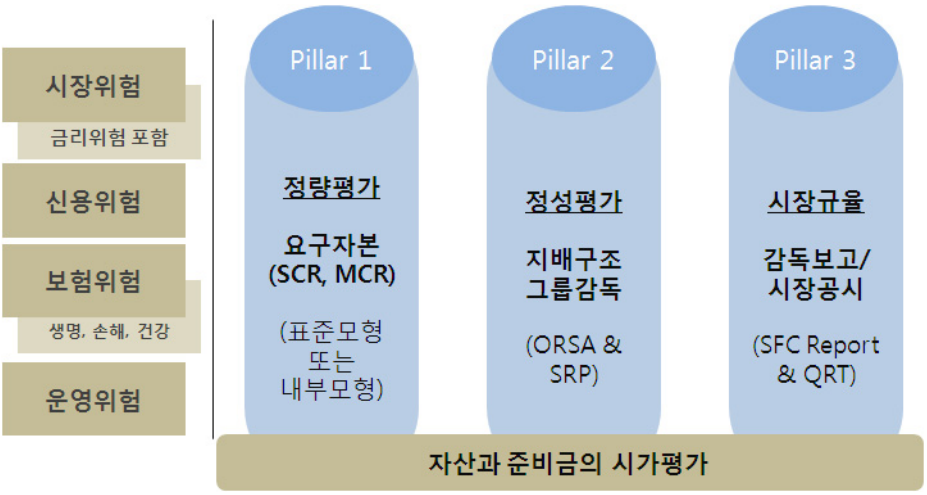

2. 미국 RBC/SMI

가. 배경

미국 RBC의 정량평가는 위험계수방식을 이용한 요구자본 산출체계로 1990년대에 도입되었다. EU Solvency II와 다르게 미국 RBC는 오랜 경험을 거치면서 위험이 추가되고 그에 맞는 방법론이 채택되는 형태로 진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RBC에서는 위험마다 위험기간, 신뢰수준, 위험척도가 통일되지 않은 형태로 나타난다. 2000년대에 금리위험, 주식에 대한 시장위험 등이 포함되었고, 변액보험 등에 대해서는 위험계수 대신 시나리오 방식으로 위험량을 측정하는 등 EU Solvency II에서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변화가 미국 RBC에서도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RBC는 기본적으로 위험계수방식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기 직후 미국 보험감독에 대한 국제적 기준 수용에 대한 압력이 커지면서 미국 보험감독자협의회(NAIC)는 ICP 논의와 국제회계기준의 발전을 반영하여 지급여력규제 현대화작업(SMI: Solvency Modernization Initiative)을 추진하여 RBC 정량평가 개선, 정성평가 ORSA 도입, 준비금 평가와 관련된 감독회계 정비, 담보를 요구해 온 재보험규제의 개선, 그룹감독의 5개 분야의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 RBC가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흐름에 대응하고 있는 분야가 ORSA로 대표되는 정성평가부문이다.

- RBC 요구자본 : ICP 17 (자본적정성)
- ORSA : ICP 16 (감독목적 ERM)
- 그룹감독 : ICP 23-26 (그룹감독 관련 기준)
- 감독회계 : ICP 14 (자산과 부채의 평가)
- 재보험 : ICP 13 (재보험 및 위험전가)

나. 정성평가 ORSA의 도입

미국 SMI는 RBC 정량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ORSA를 2015년부터 시행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13] IAIS의 ICP는 보험회사가 자사의 위험관리와 현재 및 장래 지급여력의 적정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14] 이에 따라 NAIC는 최소 1년마다 ORSA를 실시할 것을 보험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그림 Ⅲ-2〉 ORSA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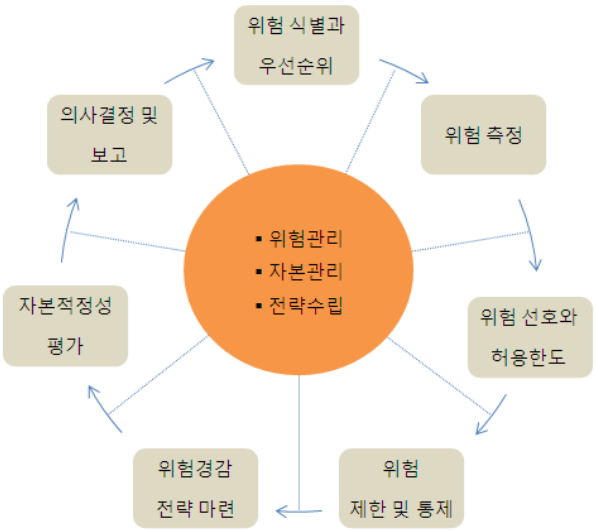

ORSA는 그 자체가 하나의 절차이며 동시에 감독당국의 요건이기도 하다. ORSA는 위험을 식별, 측정하여 그 허용한도와 경감방안을 마련하고 가용자본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경영의사결정을 내리는 일련의 절차이다. 다른 한편으로, ORSA는 보험회사가 자사의 ORSA 절차가 효과적임을 제3자에게 입증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13) 유럽을 제외하면 미국 이외에도 캐나다, 일본, 호주 등이 ORSA 시행요건을 마련하고 있다.

14) ICP16 문단 16.11.

문서화할 것을 요구하는 감독당국의 요건이다. 이를 위해 NAIC는 ORSA 매뉴얼(ORSA Guidance Manual)을 보험회사에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ORSA 절차와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내부의 의사결정단계(지배구조)를 거쳐야 하고, 그 문서의 주요 내용(ORSA Summary Report)을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에 제출되는 ORSA 보고서는 크게 보험회사 위험관리 체계에 대한 기술(Section 1), 보험회사가 노출된 위험에 대한 정량 및 정성 평가(Section 2), 위험 총량과 이에 상응하는 가용자본의 적정성 평가(Section 3)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또한 감독당국에 보고되지 않은 ORSA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감독당국의 현장검사에서 검토될 것이다.

다. Solvency II와 RBC/SMI 비교

우선 유럽의 Solvency II는 원칙중심으로 운영되는 반면, 미국 RBC는 규정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정량평가 측정이나 보험회사 내부모형의 인정에서 크게 대비된다. 유럽 Solvency II는 모든 위험에 대해 신뢰구간 99.5%에 위험기간 1년이라는 공통 기준을 적용하고 내부모형 활용을 권장하지만, 미국 RBC는 신뢰구간이나 위험기간이 위험마다 다르고 내부모형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다.

〈표 Ⅲ-1〉 유럽 Solvency II와 미국 RBC의 비교

	EU Solvency II	미국 RBC/SMI
요구자본 산출	• 원칙중심 • 하향식(Top-down) • Value-at-Risk (VaR) • 99.5% percentile	• 규정중심 • 상향식(Bottom-up) • 다양한 위험척도(VaR, CTE 등) • 90th~95th percentile
위험기간 (time horizon)	• 1년	• 위험에 적절한 기간 설정
위험관리능력 평가	• ORSA	• ORSA
보고 및 공시	• 연간보고(SFC Report) • 분기보고(QRT)	• 감독보고 • RBC

자료: 김해식 · 조재린(2013), p. 15.

그러나 EU Solvency II와 미국 RBC/SMI의 최종적인 모습은 유사한 모습으로 수렴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두 감독체계 모두 3층 구조의 틀을 가지고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을 평가하며 정성평가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다. ORSA가 정착된 환경에서 보험회사 내부모형이 RBC 표준모형을 대체하는 데에 큰 장애는 없을 것이며, 그만큼 두 체제 간 정량평가의 차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유럽과 미국이 상대 체제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자국의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IAIS ICP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형태로 재정립될 것이다.

3. 아시아 국가들의 대응

아시아 국가들은 지급여력 감독체계 개편에 있어서 일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나 나머지는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지급여력 감독체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국가로는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을 들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 대만, 말레이시아, 중국, 태국 등은 다른 나라의 변화를 지켜보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표 Ⅲ-2〉 RBC 도입 시기

국가	인도네시아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시기	2000년	2002년	2009년	2011년

자료: Brahin(2012).

호주는 약 3년 동안의 검토기간 끝에 2013년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 세계 최초의 원칙중심(principle-based) 지급여력 감독체계인 LAGIC(Life and General Insurance Capital Standards) 체계를 도입하였다. 호주는 보험산업에 있어서 유럽과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지급여력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는 1997년 미국 RBC 체제를 도입하였고, 2012년 정량평가의 신

뢰수준을 90%에서 95%로 상향 조정하였다. 일본은 유럽계 재보험사들과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짐으로써 Solvency II 도입에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는 2004년 RBC1을 채택하였고, 2012년 RBC2 시행안을 공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제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이는 아시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싱가포르의 국가 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또한 RBC2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조되고 있는 금융부문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기도 하다. 한국과 싱가포르 모두 2013년 IMF의 금융부문평가(FSAP) 직전인 2012년에 새로운 RBC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싱가포르는 RBC2를 2014년부터 시행한다고 공표했으나 다양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어 실제 시행은 2016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